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273
-----------	------

2020년 2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여 명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26일 상정, 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 명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 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그 결

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여 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73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하여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제출, 심사기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교육정책 체험과 우수 교육사례 발굴이라는 공무국외여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같은 사업은 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

특별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다양한 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붙임〕 참고).

- 그러나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었고, 국외연수 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체험과 탐구보다는 유명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바 있습니다.¹⁾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내실화하여 외유성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검토(안 제4조의2)

- 먼저 안 제4조의2는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심사대상인 여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으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결과, 이에 대한 공개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5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여행 목적과 여행동기, 여행기관 등의 여행개요와 여행일정, 여행경비, 여

1) 2019년 학교공간혁신 국외연수단(단장 김원찬 부교육감)의 국외연수의 경우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학교공간 구성과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보고 교육청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어떻게 이를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8일간 공식일정 중 학교공간혁신과 관련된 학교방문은 단 2곳뿐이었고 이 또한 1시간정도의 짧은 방문에 그치는 등 일정의 대부분이 성당, 궁전, 광장 등 유명 관광지 여행 위주로 계획되었음.

행효과와 외교부 협조(재외공관 협조 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 준비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의 사전 자문·협의·조정 과정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합니다.
- 다만, 안 제4조제2항제1호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의2의 조명이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4조의2의 조명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재와 같이 7명으로 유지하면서 임명직 1명을(기획조정실장)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모두 위촉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이 9명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회의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내부 관련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무국외여행은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위원의 비율을 원안보다 상향하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조정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심사위원회 구성 권한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 및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구성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 수) 총 7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 구성)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은 3명
 - (본청 내부위원) 당연직 직위로 지정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은 감사관, 교육혁신과장으로 함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각 기관(학교)장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 원 장	권 성 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2	부위원장	이 길 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장)	"
3	위 원	이 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4	위 원	이 종 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
5	위 원	신 문 철	외부위원	위촉직
6	위 원	박 현 숙	외부위원	"
7	위 원	최 창 우	외부위원	"

※ 위원 임기: 2019. 1. 19. ~ 2021. 1. 18.(2년)

○ 그러나 현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는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²⁾ 회의 참석률도(총 98회 중 3회) 저조한 상황이고,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임명직과 위촉직의 구성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2)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에는 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과소로 인한 서면심사의 남발 우려 및 교육청의 제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³⁾

- 다음으로 현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교육장, 소속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그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가 각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역시 교육장에게 위임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명확히 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무원외여행 조례」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을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부서의 장, 공무원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등의 4명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원외출장 조례」 제8조에서도 임명직 위원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감사·예산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외출장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3
----------	------------

제안연월일 : 2020년 2월 26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I. 수정이유

-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명확히 함.

II. 주요내용

-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로 함(안 제4조의2 조명).
-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 조명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교육감이”를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제4조의2(<u>공무국외활동계획서</u> 제출 등) ① ~ ③ (생략)	제4조의2(<u>공무국외여행계획서</u> 제출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u>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1. ~ 2.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u>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1. ~ 2.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교육감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부터 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생략)</p> <p>②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p> <p>1. <u>여행계획서</u></p> <p>2. ~ 3. (생략)</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4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u>공무국외여행계획서</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u></p> <p><u>③ 교육감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u></p>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6명으로 한다.

1.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 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2.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 ⑦ (생략)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분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3.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4.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